

(비공식 번역)

(Official Emblem)

**투자위원회고시**

**제Sor.6/2561호**

**국제 비즈니스센터 촉진**

투자위원회는 지역 및 글로벌 사업 투자의 중심지로 태국을 활용하려는 계열사 또는 국제 무역업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기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을 위하여, 그리고 태국 내 국제 비즈니스 센터가 더 많이 설립될 수 있게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며, 국제 비즈니스 센터 설립에 대한 동기 부여를 높이고 지원하고자 불기 2520년(1977년) 투자 유치법 제16조 두 번째 단락에 의거하여, 2014년 12월 3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2/2557호에 첨부된 리스트 Section 7 항목을 다음과 같은 활동, 조건, 인센티브로 규정한다.

활동	조건	인센티브
7.34 국제 비즈니스센터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IBC)	1. 계열사에 제공할 서비스 진행 계획이 있어야 하며, 제공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범위가 해당된다. 1.1 일반 관리, 사업 계획 및 사업 연락 1.2 원료 및 부품 소싱 1.3 제품 연구개발 1.4 기술지원 1.5 마케팅 및 판촉 1.6 인력 관리 및 교육 1.7 재무 컨설팅 1.8 경제 및 투자 분석 및 연구 1.9 신용 관리 및 통제 1.10 재무 센터(Treasury Center) 1.11 국제 무역업 1.12 세무국 규정에 따른 기타 지원 서비스  2. 납입 등록 자본금은 1,000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3. IBC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춘 직원을 10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계열사에 재무관리 서비스만 제공하는 IBC의 경우, 기술과	B1 (연구개발과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만 해당함)

	<p>지식을 갖춘 직원을 5인 이상 고용하면 된다.</p> <p>4. 국제 무역사업을 진행할 경우 위의 사업 범위 1.1~1.10 중 하나 이상이 해당해야 한다.</p> <p>5. 수출용 제품에 필요한 원재료 및 필수 재료는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받아볼 수 없다.</p> <p>6. 프로젝트의 가치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권리 및 혜택(메리트)은 받아볼 수 없다.</p>	
--	---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일 불기 2561년(2018년) 12월 11일

(General Prayut Chan-o cha)

투자위원회 의장